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학생회 회칙

개정안 2025.03.07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모임의 이름은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학생회라 한다.

제2조(소재) 이 모임의 사무실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연구실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연구 활동 신장,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이 모임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재학생.
2.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수료생.

제5조(명예회원) 이 모임의 명예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졸업생.

제6조(권리와 의무) 이 모임의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를 낼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직

제7조(임원) 이 모임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제8조(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박사과정 재학생에서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직무)

1. 회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고, 모임의 일을 통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모임의 서무와 여러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11조(고문) 이 모임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이 모임은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둔다.

제13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5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고문 추대.
2. 회칙 개정.
3. 예산, 결산 및 기타 중요 안건.

제5장 재정

제16조 이 모임의 경비는 회비, 대학 회계 찬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7조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